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63
----------	------

발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의자: 송도호 의원(1명)

찬성자: 김경, 박강산, 박승진,
박칠성, 서준오, 이상욱,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최기찬, 한신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함.(상위법 변경)

2. 주요내용

- 가. 제9조 제목,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다.

3.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

3. (현행과 같음)

② -----
----- 재건축진단-----

----- 재건축진단 -----

----- 재건축진단 -----

----- 재건축진단 -----
----- 재건축진단-----
-----.

③ 재건축진단-----

----- 재건축진단-----
----- ----- 재건축진단-----

-----.

④ -----
--- 재건축진단 -----

--- 재건축진단 -----
-----.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u>안전진단</u>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고, <u>안전진단</u>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안전진단</u>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u>안전진단</u>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p> <p>⑥ (생 략)</p>	<p>⑤ ----- ----- ----- <u>재건축진단</u> ----- ----- <u>재건축진단</u>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재건축진단</u>----- -- <u>재건축진단</u> ----- ----- ----- ----- ----- ----- ⑥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